

#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주주 각위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디티알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13일



株式會社 디티알 오토모티브



대표이사 金 相 憲, 金 源 鐘